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
2024. 6. 21(금) 10:00

제25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기획경제국 소관)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I.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534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4. 5. 28.
- 라. 회부일자 : 2024. 5. 28.

II.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금천구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건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금천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III. 주요내용

- 가. 결산개요
- 나. 세입·세출의 결산
- 다. 재무제표
- 라. 성과보고서
- 마. 결산서 첨부서류

IV.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제150조(결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결산 승인)

○ 관련서류 : 2023회계연도 결산서(안) 및 결산검사 의견서

V. 검토내용

1. 금천구 결산 총괄

가. 2023회계연도 결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결산상 잉여금(C=A-B)
합 계	907,504,542,186	939,282,403,857	719,070,318,639	220,212,085,218
일반회계	871,278,405,646	902,765,906,394	706,977,285,639	195,788,620,755
특별회계	36,226,136,540	36,516,497,463	12,093,033,000	24,423,464,463

회 계 별	이월액			보조금 실제반납금		현년도 채무상환	순세계잉여금
	명시	사고	계속비	보조금반납금	교부차액		
합 계	40,295,193,340	41,493,613,360	28억	8,254,748,246	△854,022,640		128,222,552,912
일반회계	40,295,193,340	38,049,025,250	28억	8,224,906,056	△851,142,640		107,270,638,749
특별회계	-	3,444,588,110	-	29,842,190	△2,880,000		20,951,914,163

본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939,282,403,857원으로 예산현액 907,504,542,186원보다 31,777,861,671원이 더 수납됨.

세출결산액은 세입결산의 76.5%인 719,070,318,639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20,212,085,218원임.

이 중 명시이월비 40,295,193,340원, 사고이월비 41,493,613,360원과 계속비이월 2,800,000,000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7,400,725,606원을 공제한 집행잔액에 채무상환으로 사용한 금액 0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28,222,552,912원 임.

나. 순세계잉여금 처리현황

(단위 : 원)

회 계 별	계	기편성예산	추경재원조정액	비 고
합 계	128,222,552,912	97,666,681,000	30,555,871,912	
일 반 회 계	107,270,638,749	78,215,001,000	29,055,637,749	
특 별 회 계	20,951,914,163	19,451,680,000	1,500,234,163	

2023년 순세계잉여금은 128,222,552,912원으로서 2024년도 예산에 기편성된 일반회계 78,215,001,000원과 특별회계 19,451,680,000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29,055,637,749원과 특별회계 1,500,234,163원을 합한 30,555,871,912원이 2024년도 추경재원으로 편성 가능한 금액임.

다. 예비비 지출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액	지출결정액(A)	지출액(B)	이월액(C)	지출잔액(D=A-B-C)
합 계	48,431,748,000	130,000,000	119,500,000	0	10,500,000
일 반 회 계	48,331,748,000	130,000,000	119,500,000	0	10,500,000
특 별 회 계	100,000,000	0	0	0	

202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8,431,748,000원으로서

전년도 32,473,993,000원보다 15,957,755,000원 증가하였으며, 「생활보장 부가지원사업」으로 130,000,000원을 지출결정하여 119,500,000원을 지출하고 0원을 이월하였으며, 10,500,00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함.

라. 기금결산 총괄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계	39,960,529,938	1,546,401,681	11,109,730,656	9,563,328,975	41,506,931,619
남북교류협력기금	153,217,990	52,668,650	53,718,650	1,050,000	205,886,640
재난관리기금	6,813,509,572	△984,011,930	1,153,263,550	2,137,275,480	5,829,497,64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7,799,987,774	2,742,978,352	2,742,978,352	0	20,542,966,126
청년미래기금	2,060,176,208	63,412,830	113,589,470	50,176,640	2,123,589,038
중소기업육성기금	5,911,786,069	△853,277,453	4,065,877,130	4,919,154,583	5,058,508,616
자활기금	916,250,274	184,245,242	233,494,242	49,249,000	1,100,495,516
노인복지기금	351,435,402	506,658	7,884,158	7,377,500	351,942,060
양성평등기금	461,077,480	△31,349,887	9,123,763	40,473,650	429,727,593
환경공무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476,551,225	△5,116,550	23,082,650	28,199,200	471,434,675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308,953,648	38,753,425	41,079,907	2,326,482	347,707,073
옥외광고발전기금	1,133,678,660	△132,942,540	148,246,630	281,189,170	1,000,736,120
도로굴착복구기금	2,690,685,059	486,381,671	2,417,872,541	1,931,490,870	3,177,066,730
식품진흥기금	883,220,577	△15,846,787	99,519,613	115,366,400	867,373,790

본년도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3종으로
 전년도말 39,960,529,938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11,109,730,656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9,563,328,975원이고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41,506,931,619원임

2. 기획경제국 2023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가. 세입결산현황

(단위 : 원)

부서명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세입결산액(B)	징수율(B/A)
계	532,844,776,646	580,668,492,524	563,790,640,894	97.09%
기 획 예 산 과	378,521,992,646	403,448,346,124	403,448,346,124	100.00%
지 역 경 제 과	13,874,076,000	13,962,264,360	13,956,419,360	99.96%
일 자리 청 년 과	5,134,418,000	5,154,599,610	5,154,599,610	100.00%
재 무 과	9,070,000,000	11,166,769,240	11,166,769,240	100.00%
세 무 1 과	123,440,493,000	143,772,444,280	127,365,970,570	88.59%
세 무 2 과	2,803,797,000	3,164,068,910	2,698,535,990	85.29%

- 2023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세입 예산현액은 5,328억 4,477만 6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806억 6,849만 2천원, 세입결산액은 5,637억 9,064만원으로 징수율은 97.09%임.

나. 세출결산현황

(단위 : 원)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금액	비율(%)
계	104,846,033,210	30,789,141,025	22,751,099,060	859,596,100	50,446,197,025	48.11
기획예산과	59,104,797,000	9,821,981,695	0	0	49,282,815,305	83.38
지역경제과	31,380,647,000	9,010,009,080	22,106,492,960	41,207,580	222,937,380	0.71
일자리청년과	12,787,428,210	10,628,977,960	644,606,100	815,038,250	698,805,900	5.46
재무과	469,596,000	427,018,030	0	0	42,577,970	9.07
세무1과	472,128,000	378,870,170	0	3,350,270	89,907,560	19.04
세무2과	631,437,000	522,284,090	0	0	109,152,910	17.29

○ 2023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세출 예산현액은 1,048억 4,603만 3천원이며, 지출액은 307억 8,914만 1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27억 5,109만 9천원, 보조금반납금은 8억 5,959만 6천원, 집행잔액은 504억 4,619만 7천원임.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의 비율은 48.11%입니다.

1) 다음연도 이월사업

〈명시이월사업〉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액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사유
계		25,009,320	20,894,410	4,927,305	10,116,424	
지역경제과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 (시설현대화 전환사업)	11,801,426	11,195,534	945,868	1,810,382	(연도내 지출불가) 현재 공정을 9.47%. 2025. 12월 준공예정

부서명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액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사유
지역 경제과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 (주차환경개선)	5,093,540	4,258,010	266,223	4,159,640	(연도내 지출불가) 현재 공정을 9.47%. 2025. 12월 준공예정
지역 경제과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 (상권활성화 어울림센터)	3,452,000	814,755	0	3,452,000	(연도내 지출 불가) 2025. 12월 준공예정
지역 경제과	반려견 놀이터 설치	160,000	814,755	9,911	150,000	(연도내 지출 불가) 사비보조금이 2023.11.23. 교부되었고 설계용역이 2023.12.20. 완료
일자리 청년과	금천 청년꿈터 신축	4,502,354	3,811,356	3,705,303	544,402	(연도내 지출 불가) 2023. 12월 준공예정

○ 기획경제국 명시이월사업은 5건 101억 1,642만 4천원임

<사고이월사업>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액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사유
계		17,850,297	16,982,136	4,618,660	9,834,675	
지역 경제과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 (시설현대화 전환사업)	9,926,236	9,881,981	784,412	9,045,176	
지역 경제과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 (주차환경개선)	3,711,667	3,285,574	147,339	667,677	
지역 경제과	전통시장 보이는 소화기 설치	38,040	21,619	0	21,618	
일자리 청년과	금천 청년꿈터 신축	4,174,354	3,792,962	3,686,909	100,204	

○ 기획경제국 사고이월사업은 4건 98억 3,467만 5천원임.

<계속비 사업>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액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사유
계		2,800,000	0	0	2,800,000	
지역 경제과	은행나 은객편의시 무설립	2,800,000	0	0	2,800,000	부지매입 협상으로 인한 사업추진 일정 지연 및 2024년 내 원인행위 불가

○ 기획경제국 계속비 사업은 1건 28억임.

2) 예산전용현황

(단위 : 천원)

부서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전용액		사유
				감액	증액	
기 획 경 제 국			606,081	42,670	42,670	
지 역 경 제 과	기 업 경 쟁 력 강 화 지 원	201-03 행사운영비	60,000	40,000	0	SBA의 수출상담회 사업 진행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기관에 교부하기 위해 전용
	기 업 경 쟁 력 강 화 지 원	308-11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495,400	0	40,000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서울형 뉴딜일자리)	201-01 사무관리비	1,935	670	0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사업 인건비 부족에 따른 전용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서울형 뉴딜일자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2,146	0	670	
일 자 리 청 년 과	금천청년 마케터 양성(협치사업)	201-01 사무관리비	8,000	2,000	0	금천 청년정책 SNS 홍보 서포 터즈 활동비 예산 전용
	금천청년 마케터 양성(협치사업)	301-14 기타보상금	18,600	0	2,000	

○ 기획경제국 예산 전용은 3건 4,267만원임.

3) 집행잔액

(단위 : 천원)

부서명	예산현액 (A)	집행잔액 (B)	비율 (B/A)	사유별					
				보조금 정산잔액	낙차	찰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지출 잔액	예비비
계	104,846,033	50,446,197	48.1	435,605	2,176	78,250	1,728,418	48,201,748	
기획예산과	59,104,797	49,282,815	83.4	0	0	45,600	1,035,467	48,201,748	
지역경제과	31,380,647	222,937	0.7	98,414	300	32,650	91,573	0	
일자리 청년과	12,787,428	698,806	5.5	334,041	1,876	0	362,889	0	
재무과	469,596	42,578	9.1	0	0	0	42,578	0	
세무1과	472,128	89,908	19.0	3,150	0	0	86,758	0	
세무2과	631,437	109,153	17.3	0	0	0	109,153	0	

- 2023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집행잔액은 504억 4,619만 7천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48.1%임.
- 집행잔액 사유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4억 3,560만 5천원, 낙찰차액이 217만 6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825만원 지출잔액 17억 2,841만 8천원, 예비비 482억 174만 8천원임.

다. 기금결산현황

(단위 : 천원)

구분	부서명	전년도말 조성액(A)	당해연도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계		25,771,950	1,953,113	6,922,444	4,969,331	27,725,063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기획예산과	17,799,988	2,742,978	2,742,978	0	20,542,966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역경제과	5,911,786	-853,278	4,065,877	4,919,155	5,058,508
청년미래 청년기	일자리청년과	2,060,176	63,413	113,589	50,176	2,123,589

- 2023회계연도 기획경제국 기금은 기획예산과 통화재정안정화기금, 지역경제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일자리청년과 청년미래기금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69억 2,244만 4천원이며 사용액은 49억 6,933만 1천원으로 최종 2023년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77억 2,506만 3천원임.

라. 예비비 결산현황

- 2023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예비비 사용내역은 없음
(※ 복지지원과의 저소득 취약계층 난방비 1건 1억 1,950만원)

3. 검토의견

- 본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집행부가 한 회계연도 동안 예산을 집행한 뒤, 그 내용에 대하여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사후 의회의 승인 절차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 받음으로써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
- 결산검사의견서에 의하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5년 평균 세입 증가율이 세출 증가율보다 0.5% 높으며, 매년 많은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초과세입금은 322억 2,900만원 감소함.

- 집행부에서는 초과세입금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조정교부금의 정확한 세수 추계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일부 예산 전용내용을 보면 당초 본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음에도 적정 편성을 못한 것으로 전용은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기획경제국 세출결산 내역을 종합 검토한 결과, 대체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정확한 추계를 통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붙임 관계 법령 1부. 끝.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44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88호, 2024. 5. 7., 타법개정]

제82조(결산 승인) 법 제150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시행 2024. 4. 16.] [대통령령 제34408호, 2024. 4. 16., 일부개정]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6.>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감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사의견서와 감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0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4. 4. 1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지방재정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신설 2020. 6. 9.>

1.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④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11. 8. 4.]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8. 4.]